

2026 일반행정법 교과서 수정표

목차

1. 교과서 수정 사항

대상과목: 일반행정법(학부)

<부록> 주요 법령 변화 내용

2. 워크북 수정 사항

1. 교과서 수정 사항

21-22쪽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뒷 부분에 다음 내용 추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25.4.4. 2024헌나8 결정)고 보아 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하였다.

39쪽

3째줄

여기서 조약이란 “조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혹은 국제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협의”를 말한다.

변경->

여기서 조약이란 “조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혹은 국제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41쪽

(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동법 제7조).

①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공포일 시행의 원칙).

변경 ->

(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동법 제7조).

① 법령등을 공포한 날(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공포일 시행의 원칙).

* <부록>의 행정기본법 개정 사항 참조

99쪽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기본법」은 ①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그리고 ③ ①과 ②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등”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종래 학설상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었던 「금융위원회규칙」,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등이 「행정기본법」에 의하여 법규명령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고시 등의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만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기본법」은 ①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그리고 ③ ①과 ②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등”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종래 학설상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었던 「금융위원회규칙」,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등이 「행정기본법」에 의하여 법규명령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고시 등의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만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 <부록>의 행정기본법 개정 사항 참조

128쪽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①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③ ①과 ②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등”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등”에 포함되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하게 된다.

변경->

「행정기본법」은 ①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③ ①과 ②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등”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등”에 포함되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하게 된다.

* <부록>의 행정기본법 개정 사항 참조

189쪽

나.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

개별법에서 고시 또는 공고를 통지방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효력발생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동규정 제6조 제3항).

변경->

나.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

개별법에서 고시 또는 공고를 통지방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효력발생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동규정 제6조 제3항).

204쪽

*법령 제·개정과 무관하게 오탈자 처리

12번째 줄

한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의사면허처분 사이(대법원 1975.12.9. 선고 75누123 판결),

변경 ->

한지의사(限地醫師)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대법원 1975.12.9. 선고 75누123 판결),

291쪽

*법령과 무관하게 변경

4)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명확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수집,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의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처리 사항의 공개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개인정보의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정보주체로서 신뢰 확보 노력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변경 ->

4)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① 명확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수집(동법 제3조 제1항), ②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동조 제2항),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의 보장(동조 제3항), ④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동조 제4항), 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사항의 공개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동조 제5항), ⑥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동조 제6항), ⑦ 개인정보의 익명 또는 가명 처리(동조 제7항), ⑧ 정보주체로서 신뢰 확보 노력(동조 제8항)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④ (생략)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5. (생략) <신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 을 요구할 권리 4.·5. (현행과 같음)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

313쪽

「행정기본법」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동법 제28조 제1항).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에는 ① 부과·징수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⑤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동법 제28조 제1항)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통일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변경->

「행정기본법」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동법 제28조 제1항).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에는 ① 부과·징수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¹⁾, ⑤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동법 제28조 제2항)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통일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39쪽

3. 이중배상의 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법령²⁾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³⁾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이것을 다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 1)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3)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있다.

변경 ->

3. 이중배상의 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법령⁴⁾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⁵⁾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이것을 다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조(배상책임) ①·② (생략) <신설>	제2조(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54쪽

③ 보상의 절차는 정하고 있지만,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문화재보호법」 제46조)

변경 ->

③ 보상의 절차는 정하고 있지만,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문화유산법」 제46조)

*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과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피해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60075 판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60075 판결).

5)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피해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제정]으로 변화, 정부조직법도 변경

정부조직법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② (생략) ③ 문화재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 을 둔다. ④ 문화재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 을 둔다. ④ 국가유산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3쪽

12번째줄

(동법 제36조 제7항).

변경->

(동법 제36조 제8항).

374쪽

가. 이의신청과 행정쟁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즉 처분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의신청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제처, 372쪽).

변경->

가. 이의신청과 행정쟁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즉 처분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의신청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제처, 372쪽).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5항).

375쪽

「행정기본법」은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③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

처 행하는 사항, ④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법상의 이의신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동법 제36조 제7항).

변경->

「행정기본법」은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③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법상의 이의신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동법 제36조 제8항).

446쪽

* 관련 법령과 조문 변화에 따른 오탈자 교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동법 제222조 제1항) 또는 정당 또는 후보자(동법 제223조 제2항)가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2) 기관소송의 당사자

기관소송의 당사자 역시 “법률이 정하는 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소송(동법 제10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동법 제28조)은 교육감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동법 제222조 제1항) 또는 정당 또는 후보자(동법 제223조 제1항)가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2) 기관소송의 당사자

기관소송의 당사자 역시 “법률이 정하는 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소송(동법 제12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시·도회의의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은 교육감 혹은 교육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제4항).

2. 제·개정 법령 주요 내용

1)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2) (생략)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생략) 2. ~ 5.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2) (현행과 같음)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3. (생략)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생략) <신설>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채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	--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2. 워크북 수정 사항

12쪽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 뒷 부분에 다음 내용 추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25.4.4. 2024헌나8 결정)고 보아 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하였다.

44쪽

「행정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는 「감사원규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금융위원회규칙」,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고시 등)이 있다.

변경->

「행정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는 「감사원규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금융위원회규칙」,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고시 등)이 있다.

95쪽

8번 문제 ④ 문항

④ 한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의사면허처분 사이

변경 ->

④ **한지의사(限地醫師)**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134쪽

3) 이중배상의 금지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이것을 다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

3) 이중배상의 금지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이것을 다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